

정보통신망법과 법인의 책임

최근 기업의 영업활동보장을 위해 각종 규제와 규정은 삭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이며, 심지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인 양벌규정까지 폐지하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규정은 전혀 다르다. 2008년에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설 움직임이 진행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법률은 강화되고 있다. 본 기고는 두 법 중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이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노환철 | 노환철법률사무소 변호사_rhc0622@hanmail.net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률이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2조1항6호).

법률적용 대상 지속 확대

본래 정보통신망법은 적용대상이 한정된 개별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기존 적용대상은 유무선 통신, 초고속인터넷, 포털, 여행업, 호텔, 항공운송사업, 학원, 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였던 반면, 2009년 7월부터 정유사, 자동차매매업, 주택관리업, 결혼중개업, 직업소개소, 의료기관, 부동산중개업, 주택건설사업, 체육시설업, 서점업, 비디오대여점, 영화관, 건설기계사업, 자동차대여업 역시 정보통신망법 준용사업자로 간주되고 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특징 중에서는 과징금규정 신설을 빼놓을 수 없다. 기존에는 과태료 등으로 규제하던 것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기존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 그쳤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로 일정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도 일정액 이하로 일반적으

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물론 과징금 역시 형벌은 아니지만 징수와 체납처분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게 된다. 또한, 법을 위반해 얻은 이익을 박탈·환수하는 개념으로 향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64조의3). 여기에서 의미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업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징금 액수는 그 사업자의 존속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 될 수가 있다(법 시행령 69조의2).

또한 정보통신망법 28조 1항 2~5호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까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정보통신망법 제 64조의3, 제 28조제1항 2~5호).

즉 법인은 법인기관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연매출액 1%의 과징금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정보유출 등을 통제, 감시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10장 벌칙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벌칙대상 항목이 확대됐다. 특히 제 73조 제 1호에는 ‘제28조 제1항의 2호~5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 자 등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결국 사실상 모든 기업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의무화 하고 그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해 보안조치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 성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끝나지만 징역형과 벌금형 등 형사처벌은 전과로 남게 되고, 범죄경력 조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사자료표 상에 남게 되어 이후 동종 또는 유사범죄와 다른 범죄로 처벌될 경우 까지 양형 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법인의 양벌규정 ☜

기업(법인)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양벌규정에 의한 것이다. 법률상 사람인 법인은 사회적 실재로서 개인과는 별개로 독립된 사회적 기능을 갖고 활동하며, 법인기관을 통해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고,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된다. 결국 법인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위법성 판단 대상이 되고, 법질서 요구에 위반할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책임능력)도 있게 된다. 형벌은 법익의 박탈·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도 법익의 박탈로서 해산, 영업정지 등의 형벌수단도 가능하지만 현행 형벌체계에서는 주로 이익범죄를 범하는 법인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수단인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기관의 행위는 그것이 법인의 행위로 된다면 그 자신이 유책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과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것은 동일행위에 대한 이중처벌도 아닌 셈이다.

■ 정보통신망법의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제75조 1항).

양벌규정의 대상이 되는 벌칙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 74조 제1항은 실제 정보통신망법상 직원의 형사 처벌 규정 대상 중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74조1항 2~7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위반행위를 총망라한 것으로, 법인의 직원이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에도 함께 책임을 물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71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등 11호 위반행위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제72조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등 5호 위반행위 자에게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제 73조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은 자 등, 8호 위반규정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인직원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인도 해당규정상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근거는 법인이 사업주제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종업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위반행위 방지의무와 주의의무 태만에서 오는 자기행위에 기인한 독자적인 과실책임이라 할 것이고, 다만 법인대표자의 행위는 기업자체의 행위로 귀속되므로 이는 기업자신의 행위책임으로 취급된다 할 것이다. 다만, 과실책임이라도 기업체는 사용자 등에 대해서 보호자적 입장에 있으므로, 기업체와 사용자 사이에는 위험방지구담의 합리적 분배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신뢰의 원칙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기업체의 조직활동에 대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고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직원의 개인정보유출 등 위반행위를 막거나 통제할 수 있는 안전조치체계를 갖추어야 할 고도화된 의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법인에 부담되고, 이러한 직원의 개인정보유출방지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중 의미있는 규정들 ☜

정보통신망법 제45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정해 고시하고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률이 공포되면 법률에 기반해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령에 기반해 고시가 나오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종이 있으며,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지침, 다

른 하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2개의 고시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지침 중 기업입장에서 의미 있는 규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현재 개정안 작업중이라 거론하지 않음).

제 29 조 (고시 개인정보보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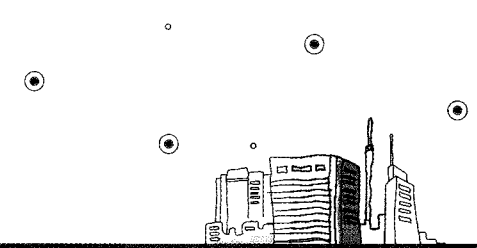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 등이 법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서비스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기업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투명하게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수탁자)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법 25조 5항).

제 26 조 (고시 개인정보보호지침)

- ① 서비스제공자등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부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이 벌금형을 받는 양벌규정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소속직원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감사, 관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위 의무를 등한시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제 10 조 (고시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 이용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개인정보접근 및 취급 최소화 규정으로, 법조문 및 시행령, 고시에 걸쳐 반복되는 규정이다. 개인정보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접근 및 취급자를 최소화하여 직원들의 권한 및 직무관리를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취급 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서비스제공자 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실질적으로, 기업 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협력업체 혹은 위탁업체 직원들의 통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8년 대형 유출사태는 개인정보를 위탁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서 발생했다.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보면 3자 위탁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잘못 역시 기업 직원의 잘못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 충분한 감사, 통제 의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고시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기술적·관리적 보호의무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서비스제공자등은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받은 사실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008년 일어난 법적 변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이다. 그만큼 2008년에 중대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정보통신 발달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가 함께 해오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법이 개별법으로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볼 때 그 적용대상은 점점 확대되어갈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조직(비영리단체까지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S**

